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자원 조례안 심사보고

2025. 2. 20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2. 3. 한선미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: 2025. 2. 4.

다. 상정일자: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(2025. 2. 20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한선미 의원

가. 제안이유

심야시간대나 공휴일 등 약국 휴업에 따라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마포구민에게 구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“공공심야약국”을 지정하고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2)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(안 제3조)
- 3)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4) 공공심야약국 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, 「약사법」
- 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
- 3) 기타

가) 입법예고 : 2025. 1. 22 ~ 2025. 1. 31. (의견 없음)

3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배경

-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와 별도로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임.
- 이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구민과 관광객 등의 구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에 대응하고 의약품의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마련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(안 제1조~안 제2조),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(안 제3조),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과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취소와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안 제6조)으로 본칙 6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.

- 안 제1조~안 제2조 목적 및 정의는 「약사법」¹⁾에 근거를 두고 공

1) 제21조의3(공공심야약국의 지정·운영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(이하 “공공심야약국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

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을 위한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음.

- 안 제3조~안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과 지정·운영은 「약사법」 시행규칙²⁾에서 정하고 있는 심야시간(오후8시~다음 날 오전1시까지)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- 안 제5조는 지정된 심야약국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과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되어 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의 해이를 막기 위해 마련함.
-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그동안 「서울특별시 공공 야간 약국 지원 조례」에 따라 마포구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정하여 심야 약국 2곳³⁾을 일당12

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2) 제11조의5(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)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”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”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·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.

만원씩 연간 8천여만원의 서울시예산으로 지원·운영하고 있음.

- 2024년 서울시 공공심야약국 추진실적을 보면 25개 자치구 3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실적은 강남구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, 상위 5개구에 마포구가 포함되어 있음.

[표. 1] 자치구별 공공심야약국 이용 실적(2024.11월 기준)

구분(개소)	건수	비율	구분(개소)	건수	비율	구분(개소)	건수	비율
강남구(2)	23,502	13.2%	광진구(1)	6,526	3.7%	종로구(1)	3,623	2.0%
서대문구(2)	17,789	10.0%	강북구(1)	6,178	3.5%	관악구(1)	2,531	1.4%
강동구(2)	16,520	9.2%	성북구(2)	6,115	3.4%	성동구(1)	2,420	1.4%
마포구(2)	13,172	7.4%	금천구(1)	5,563	3.1%	양천구(1)	2,025	1.1%
노원구(2)	11,049	6.2%	용산구(1)	5,243	2.9%	구로구(1)	1,877	1.1%
동대문구(1)	10,268	5.7%	중구(1)	4,495	2.5%	도봉구(1)	1,388	0.8%
강서구(1)	9,376	5.2%	동작구(1)	4,323	2.4%	중랑구(1)	1,163	0.7%
은평구(2)	8,178	4.6%	서초구(2)	3,869	2.2%	소계(33)	178,690	100.0%
송파구(1)	6,718	3.8%	영등포구(1)	3,792	2.1%			

- 이처럼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여겨져 서울시 시책으로 운영되고 있음.
- 이로 인해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인한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와 경증 환자의 야간 의약품 구매 환경을 마련하여 응급실 이용을 감소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가 있음.
- 다만, 구에서 별도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·운영 시 서울시 사업 지원 계획 철회에 따른 재정부담과 보건복지부에서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의 경우 시간대의 수가를 평일 18시~익일 09시, 토요일, 공휴

3) 서울시 지정 심야약국 현황 : 비온뒤숲속약국(망원역), 쉼약국(합정역)

일: 30% 가산(조제기본료, 복약지도료, 조제료)해주는 정책이 시행 중에 있어 중복 지원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임.

- 따라서, 조제 마련 후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시간대별 판매실적, 판매품목 등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이용률을 확보하는 등 재정의 추가 지원이 정책적 성과가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

[관 계 법 령]

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医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13.>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2. 3., 2018. 3. 13.>

「약사법」

제21조의3(공공심야약국의 지정·운영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(이하 “공공심야약국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

3.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4.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⑥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.

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·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